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5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57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나67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8 선고 2010가단220002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3.선고 2011나6792 판결

판결선고 2014.11.27.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원심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가.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2002.9.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4.7.26. 20,000,000원 , 2004.8.20., 24,000,000원, 2005.8.16. 21,000,000원의 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 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 중 14,225,454원 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판단

이 사건 공사는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웠고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이 사건 하자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하자 중 위 14,225,454원의 상당의 하자를 제외한 부분이 소외 회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위 판결 확정일인

2008.5.29.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6.9. 기재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774,546원([20,000,000원 +24,000,000원 +6,774,546원(21,000,000원-14,225,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2005.8.16.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6,774,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4.7.26. 및 2004.8.20. 지급한 합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과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4.7.26. 20,000,000원, 2004.8.20.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6.9.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의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박 판 사 민 판 사 김 주 심 판 사 권